

제 299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 희 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 진 호

전화 75-7834

1972. 10. 19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 보

차

레

◎ 교 시

- 제 143 호 도시계획 (시외버스정류장) 시설결정 3
- 제 145 호 사료성분등록 3
- 제 146 호 사료성분등록 4
- 제 147 호 사료성분등록 4

◎ 공 고

- 제 232 호 도시계획사업 (서울대 학교종합시설) 시행허가 6

◎ 사 명 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43 호

도시계획 (시외버스정류장)

시 설 결 정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시외버스정류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조

2. 시 설 조 석

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시외버스정류장	성동구 성수동 1가 670-41 호외 17 필지	4,620 m ² (1,400 평)	상업지역

별첨 도면은 서울시청 관할 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.

1972. 10. 17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45 호

사료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필하였기 고시한다.

1972 년 10 월 일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료공장명 : 한국사료공사
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 77 번지
3. 사료공장대표자 : 정 해 홍

등록 번호	사 료 명 칭	사 료 용 도	최 소 한		최 대 한		유효기간
	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
9-76	젖메기돼지배합사료	생후대략 2 개월 까지	%이상 18.0	%이상 2.0	%이하 6.0	%이하 9.0	72.10.18- 72.10.17
9-77	중돼지배합사료	생후대략 4 개월 이상 비육돈및 8 개월 까지	12.0	2.0	8.0	10.0	"
9-78	어린돼지배합사료	생후대략 2 - 4 개월	15.0	2.0	7.0	9.0	"
9-79	젖메기송아지배합사료	생후대략 3 개월 까지	19.0	2.5	8.0	9.0	"
9-80	젖소중송아지배합사료	생후대략 3-6 개월 까지	16.0	2.5	10	9.0	"
9-81	젖소큰송아지배합사료	생후대략 6-18 개월 까지	12.0	2.0	12.0	11.0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6 호

사료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필하였기 고시한다.

1972 년 10 월 일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료공장명 : 인 산농원 주식회사
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촌동 203-1
3. 사료공장대표자 : 김 영 오

등록 번호	사 료 명 칭	사 료 용 도	최 소 한		최 대 한		유효기간
			조단배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
9-53	젖메기송아지사료	생후 3 개월까지의 먹이	19.0% 이상	2.5% 이상	8.0% 이하	9.0% 이하	72.10.17- 74.10.16
9-54	젖소 중송아지 배합 사료	생후 3 - 6 개월까 지의 먹이	16.0"	2.5"	10.0"	9.0"	"
9-55	젖소 큰송아지 배합사료	생후 대략 6 - 18 개월까지의 먹이	12.0"	2.0"	12.0"	11.0"	"
9-56	고기소전기배합사료	고기소 중기용 먹이	15.0"	2.0"	13.0"	12.0"	"
9-57	고기소중기배합 사료	고기소 중기용 먹이	13.0"	2.0"	11.5"	11.0"	"
9-58	고기소후기배합 사료	고기소 후기용 먹이	11.0"	2.0"	10.0"	10.0"	"
9-59	젖메기 돼지 배합 사료	생후 대략 2 개월까 지의 먹이	18.0"	2.0"	6.0"	9.0"	"
9-60	어린 돼지배합 사료	생후 대략 2 - 4 개 월까지의 먹이	15.0"	2.0"	7.0"	9.0"	"
9-61	중돼지 배합사료	생후 대략 4 개월이 상의 비육돈 및 8 개월까지의 씨돼지 먹이	12.0"	2.0"	8.0"	10.0"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

서울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필하였기 고시한다.

1972 년 10 월 일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료공장명 : 천일 곡산공업 주식회사
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15 번지
3. 사료공장대표자 : 이 상 신

동 료 번 호	사 료 명 칭	사 료 용 도	최 소 한 최 대 한				유 효 기 간
	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
9-62	어린병아리 배 합사료	부화후 대략 6 주 까지 병아리용	19.0% 이상	2.5% 이상	6.0% 이하	6.0% 이하	72.10.17 - 74.10.16
9-63	중병아리 배합 사료	부화후 7 - 12 주령 의 중병아리용	16.0"	2.5"	7.0"	10.0"	"
9-64	큰병아리 배합 사료	부화후 13 주 - 초산 까지 큰병아리용	12.0"	2.5"	7.5"	10.0"	"
9-65	성계용배합사료	산 란 초 기	15.0"	2.0"	8.0"	13.0"	"
9-66	성계용배합사료	산 란 중 기	15.0"	2.0"	8.0"	13.0"	"
9-67	성계용배합사료	산 란 말 기	15.0"	2.0"	8.0"	13.0"	"
9-68	부로이라 전기 배합사료	부화후 4 주까지 육계용 병아리사료	19.0"	2.5"	6.0"	9.0"	"
9-69	부로이라 전기 배합사료	부화후 4 주이상 육계용	16.0"	2.5"	6.0"	10.0"	"
9-70	젓배기송아지 배합사료	생후 1 - 3 개월까 지 송아지용	19.0"	2.5"	8.0"	9.0"	"
9-71	젓소 큰송아지 배합사료	6 - 18 개월 큰송아 지 육성용	12.0"	2.0"	12.0"	11.0"	"
9-72	젓소용 배합사 료	생후 대략 18 개월 이 상	13.0"	2.0"	13.0"	12.0"	"
9-73	어린 돼지 배합 사료	생후 2 - 4 개월 새끼 돼지용	15.0"	2.0"	7.0"	9.0"	"
9-74	중돼지 배합사 료	생후 대략 4 개월 이상 비육돈 및 8 개월까 지 씨돼지	12.0"	2.0"	8.0"	10.0"	"
9-75	씨돼지용 배합 사료	생후 대략 9 개월이 상되는 씨돼지용	12.0"	2.0"	11.0"	11.0"	"

공 고

⑥ 서울특별시 공고제 232 호

도시계획사업 (서울대학교종합시설)

시 행 허 가

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시행 허가를
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
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
조건을 부하여 허가하였기 공고한다.

관계도서를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
계획과 및 관할 구청시민봉사실과
사업시행자인 서울대학교 총장 한심석
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
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10. 17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림동
156의1외 178 필상

2. 사업의종류 : 학교시설사업

명칭 : 서울대학교종합시설사업

3. 사업시행자의주소 : 서울특별시종로구
동숭동 31 의 1

사업시행자의성명 : 서울대학교 총장
한 심 석

4. 사업의착수 : 인가후 일주일내

준공년월일 1977. 12. 31.

5. 조 건

가.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
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
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
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받아
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나. 공시 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
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2 개 이상
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다. 도시계획법 제 78 조의 규정에 의
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.

라. 이 사업 시행에 있어 감독청이
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
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야
한다.

마. 이 허가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
없으며, 별도 사업실시 계획을
인가 받아야 한다.

사 령

⑥ 1972. 10. 19.

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재호
행정과 근무를 명함.

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최정화
행정과 근무를 명함.

시민과 지방행정주사보 최준기
회계과 근무를 명함.

서울특별시장